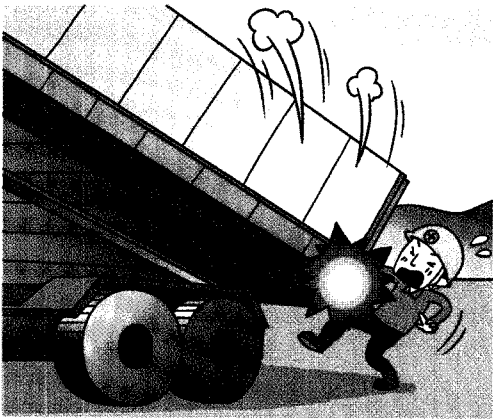


>>> 폐기물차량 하역작업중 충돌

업종	위생 및 유사서비스
기인물	폐기물 차량
생산품	산업 폐기물 처리
재해유형	충돌
피해정도	인적 물적

위생 및 유사서비스
폐기물 차량
산업 폐기물 처리
충돌
사망 1명
-



1. 재해발생개요

신소각로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물 차량 운전자가 적재함에 폐기물을 하역하고 적재함 문쪽에 끼인 잔량의 폐기물을 제거하던 중 적재함이 밀로 내려가면서 피재자의 가슴부위와 충돌하여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신소각로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물 운전기사가 ARM ROOL 차량을 입고, 적재함을 상승시켜 폐기물을 하역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적재함을 확인한 후 잔량의 폐기물이 적재함 문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재함 문으로 접근하던 중에 적재함이 밀로 내려가면서 피재자의 가슴 부위와 충돌 피재자가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가동중인 상태로 위험장소 접근
- (2) 잔량 폐기물 제거 작업 부적절
- (3)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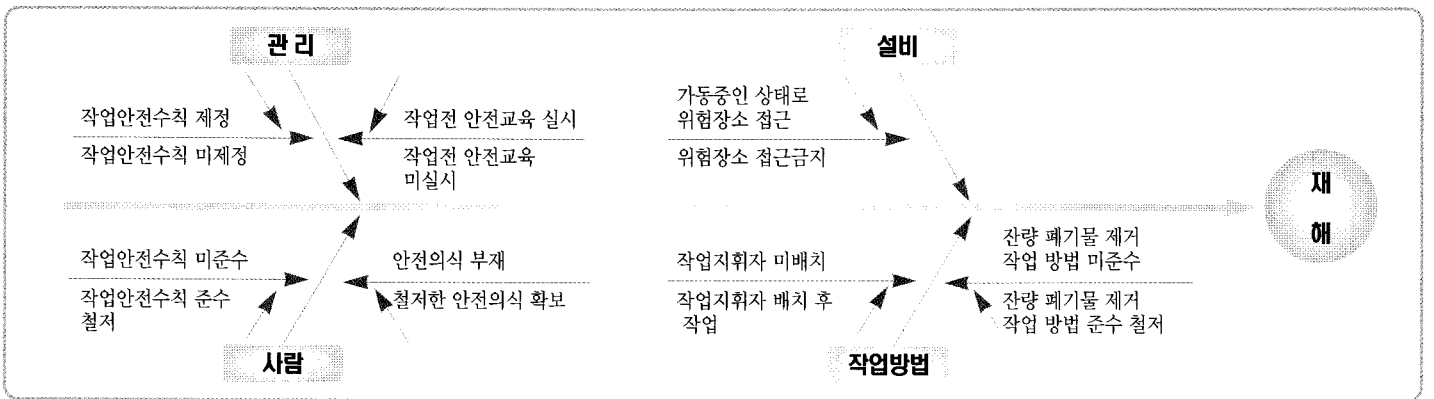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적재함 권상상태 위험장소 금근 금지
- (2) 잔량제거시 적재함을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거
- (3) 작업안전수칙 준수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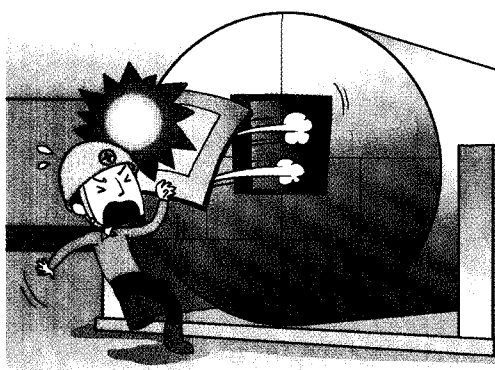
4. 범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회전로 예열작업중 장입구 커버 폭발

업종	제1차 금속산업
기인물	회전로
생산품	동괴, 동선
재해유형	폭발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물적 -



1. 재해발생개요

생선부 용동반에서 회전로 예열 작업중 장입구 커버가 폭발하면서 폭발로 비래한 장입구 커버와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회전로 열손실 및 가스방출 방지용으로 장입구에 설치된 커버에 냉각수 순환밸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회전로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작업시작전 밸브를 열지 않고(냉각수 in, out 밸브 및 Air Vent 밸브 모두 차단상태) 작업중, 커버내 잔류해 있던 냉각수가 가열되어 내부 압력이 상승되어 폭발, 용접되어 있던 장입구 안쪽 커버가 비래되면서 피재자와 충돌하여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냉각수밸브·에어벤트밸브 개폐상태 미확인
- (2) 안전밸브 미설치 및 경보설비 미흡
- (3)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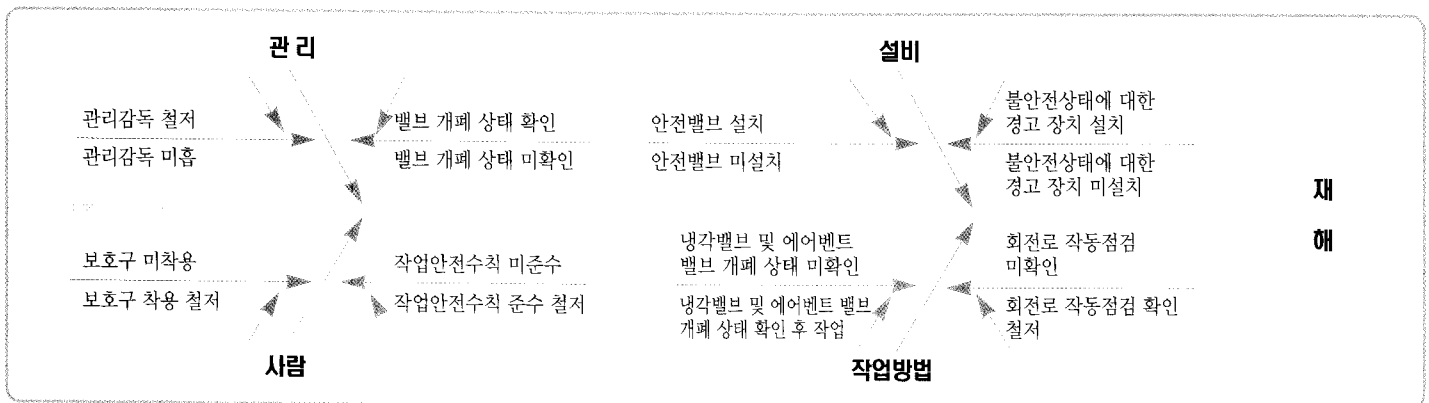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냉각수밸브·에어벤트밸브 개폐상태 확인 철저
- (2) 안전밸브 설치 및 경보설비 설치(경광등 압력계이지 등)
- (3) 보호구 착용 철저

4. 범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피막기 라인의 배관라인 점검중 협착

업종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자동피막기
생산품	자동차부품
재해유형	협착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물적 -

기계기구제조업
자동피막기
자동차부품
협착
사망 1명
-

1. 재해발생개요

자동피막기 라인의 수중펌프 모터 수리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배관장치의 확인차 점검을 하던중 자동피막기의 리프트가 작동하여 피막기 라인의 기동과 구조물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사내 피막기 라인의 수중펌프의 모터를 수리중 배관장치의 확인을 위해 점검하던 피재자가 리프트가 반대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상체를 숙여 점검하던 중 리프트가 갑자기 반대로 작동하여 피재자가 피막기 라인의 기동과 제품 BOX의 리프트 사이에 가슴과 등이 협착되어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기계 가동상태에서 비정상 작업 실시
- (2) 불시 가동 방지를 위한 전원차단 및 시간조치 미흡
- (3) 자동피막기 라인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 (4)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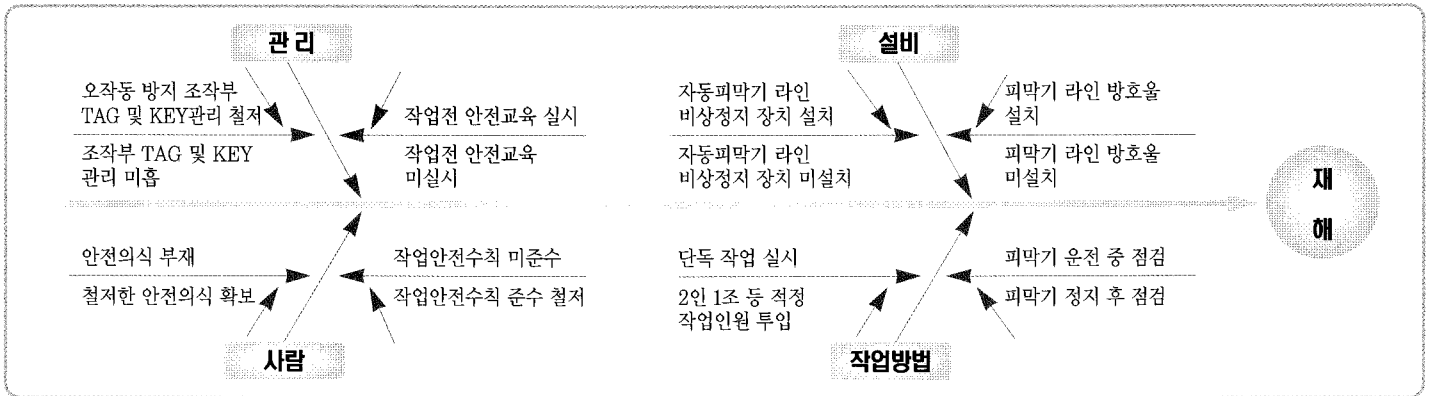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기계 가동이 완전히 멈춘상태에서 작업실시
- (2) 설비 불시가동 방지를 위한 KEY 및 TAG부착 관리
- (3) 자동 피막기 라인 비상정지장치 설치
- (4)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4. 범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원치 운반구용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추락

업종	건설업
기인물	바닥
생산품	수리
재해유형	추락
피해정도	인적 사망 3명 물적 -



1. 재해발생개요

지상 198m 높이의 연돌상부에 기 설치된 슬립폼 해체를 위해 원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른 원치 운반구를 타고 내려가던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피해자 3명이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3명이 연돌상부(198m)에 기 설치된 슬립폼 해체를 위해 별도로 설치된 원치 운반구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원치의 시브에 이물질이 끼면서 와이어로프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 와이어로프가 무게를 못이겨 파단되면서 운반구와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전원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과부하방지장치 불량
- (2)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 (3)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나. 예방대책

- (1) 과부하방지장치 성능 점검 철저
- (2) 비상정지장치 설치
- (3) 작업안전수칙 준수 철저



4. 법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